

www.mifaff.go.kr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09. 6.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09. 6.



목 차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제2조(농업의 범위)		1
	제3조(쌀의 수확기)		2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2
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3
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3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2조(지급상한면적)	4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7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p>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p> <p>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p> <p>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p> <p>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p> <p>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p> <p>제12조(현지확인 조사)</p> <p>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p> <p>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p> <p>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p>	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8
	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9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10
	제3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제3조의3(조사의 항목·방법 등)		16
	제3조의4(등록증의 발급 등)		17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18
	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5조 <삭 제>	21
	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22
	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22
	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6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23
	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23
			24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25
			26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장의 직무)		28
	제9조(위원회의 회의)		28
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9
	제10조(실무위원회)		29
	제11조(간사)		29
	제12조(수당 등)		29
제16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제13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30
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제17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		30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5조(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31
제19조(기금의 관리·운영)			31
제20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31
제21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32
제22조(기금계정의 설치)			32
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33
제24조(차입금)			3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5장 보 칙			
제25조(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			34
제26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8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34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36
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8조(보고)	제10조(보고)	38
제29조(벌칙)	제19조(포상금의 지급)		39
			41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41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2조(경과조치)	제2조(법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42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 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p>제1조(목적) 이 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논농업의 범위) 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을 말한다.</p> <p>② 법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논농업은 벼,</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p> <p>3.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 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p> <p>4.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5.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6.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p>	<p>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을 재배한 경우를 말한다.</p> <p>제3조(쌀의 수확기) 법 제2조제3호·제5호,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는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법 제2조 제5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쌀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통계청장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p> <p>③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p> <p>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p> <p>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 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p> <p>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p> <p>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p> <p>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p>		<p>제2조(지급상한면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p> <p>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50만제곱미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p> <p>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p> <p>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p> <p>4.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p> <p>1.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p> <p>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 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p> <p>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p> <p>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p>		<p>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p> <p>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p> <p>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당하는 자</p> <p>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p> <p>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 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p>	<p>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 (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 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 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 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 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 법인”이라 한다)</p>	<p>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 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p> <p>3.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 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농업에 종사(휴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농업인등</p> <p>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p> <p>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 제곱미터 이상</p> <p>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 하여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결한 읍·면·동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p>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적용에서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p>	<p>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p> <p>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미터 미만인 자</p> <p>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p> <p>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p> <p>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p> <p>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p>	<p>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p> <p>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p>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p>

번 목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가.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p> <p>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p>

번 목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p> <p>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p> <p>3)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p> <p>4)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p> <p>5)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p> <p>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p> <p>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p>

번 목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p> <p>2) 가목 2)부터 5)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p> <p>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p> <p>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3.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p>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번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p>		<p>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p> <p>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p> <p>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제3조의3(조사의 항목·방법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p> <p>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의4(등록증의 발급 등) ①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쌀</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p>		<p>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p> <p>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쌀소</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되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④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p>		<p>특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급된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3조제2항제1호의 서류 나.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

번 목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p> <p>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이웃 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3.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4.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5조 <삭 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p>	<p>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p> <p>③ 고정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말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p> <p>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기존 목표가격 산정 시 고려한 3개 연도 쌀의 수확</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p>	<p>기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과 그 이후 3개 연도 쌀의 수확기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과의 변동비율을 기존 목표가격에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4조의4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p> <p>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p>	<p>제6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약: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p> <p>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현지확인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p>	<p>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벼 재배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은 쌀 61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한다.</p> <p>④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 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할 수 있다.</p> <p>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 		<p>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4.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대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p> <p>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p> <p>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p> <p>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p> <p>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p>	<p>청할 수 있다.</p> <p>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국장이 된다.</p> <p>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p> <p>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p> <p>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p> <p>②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p> <p>제17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p> <p>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17조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p> <p>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들어온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p>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p>	<p>자수입을 말한다.</p> <p>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p>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농약잔류검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p>제21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2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p>	<p>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면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24조(차입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p> <p>제5장 보 칙</p> <p>제25조(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6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p>		<p>제8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p>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법 제9조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3. 법 제11조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p>② 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p>	<p>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p>	<p>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논농업 이용가능 여부의 인정 2. 법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8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및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讓受)·임차·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수리 4. 법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5. 법 제11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양성분검사 7. 법 제13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금지 및 등록제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8.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p> <p>9. 법 제2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p> <p>10.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약잔류검사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의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p> <p>제18조(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쌀소득등보전직</p>	<p>제10조(보고) 영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접지불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p>	<p>포함한다)는 보고대상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번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사람</p> <p>2.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한다)를 신고한 사람</p> <p>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0만원으로 한다..</p> <p>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까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2.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p>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 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이 법의 시행 전에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본다.</p>	<p>제2조(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 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p>	<p>제2조(법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2조 및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p> <p>제3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별표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 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법 제13조 제1항제 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법 제13조 제1항제 3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 제한 기간
<p>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p> <p>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p> <p>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p> <p>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p> <p>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p> <p>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3조 제1항제 4호</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p>	<p>법 제13조 제1항제 4호</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p> <p>가)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p> <p>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p> <p>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p>	<p>법 제13조 제1항제 4호</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②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m ²)		⑥ 농지이용면적(m ²)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⑩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⑪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⑫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p>「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⑬ 읍·면·동장 확인란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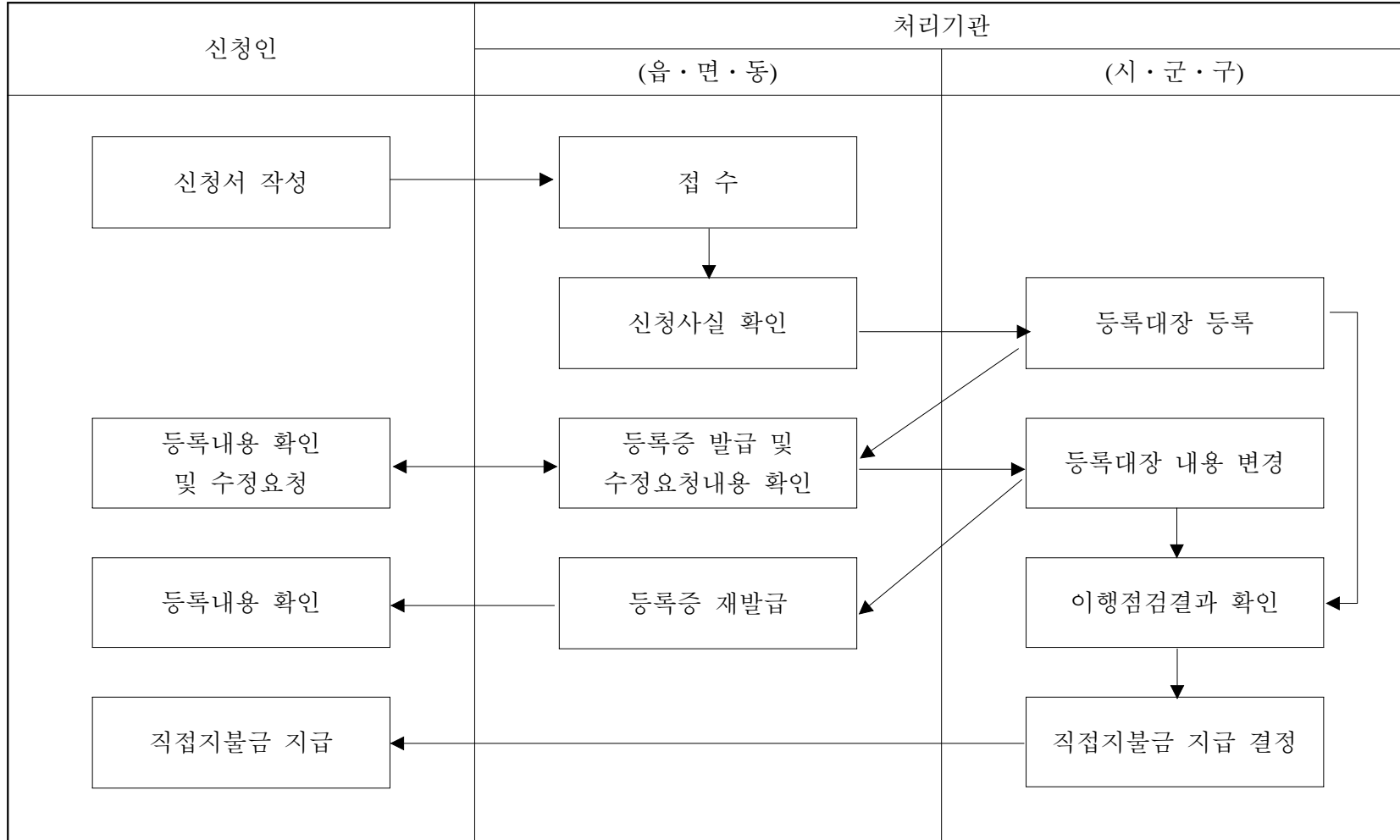
-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⑥란은 신청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벼”, “미나라”,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⑧란은 ⑦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 미나라,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x”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⑩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x”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⑪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 ⑫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 ⑬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3)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4)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5)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2) 가목2)부터 5)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²)	농지이용면적(m ²)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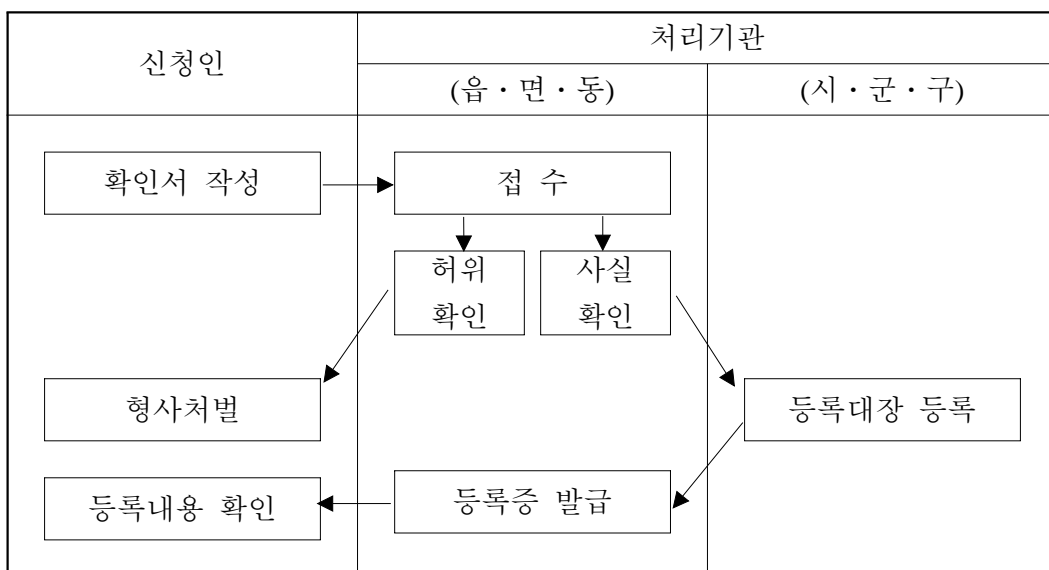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 법규	<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략)</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 5) (생략) 나. (생략)</p> <p>4. (생략)</p>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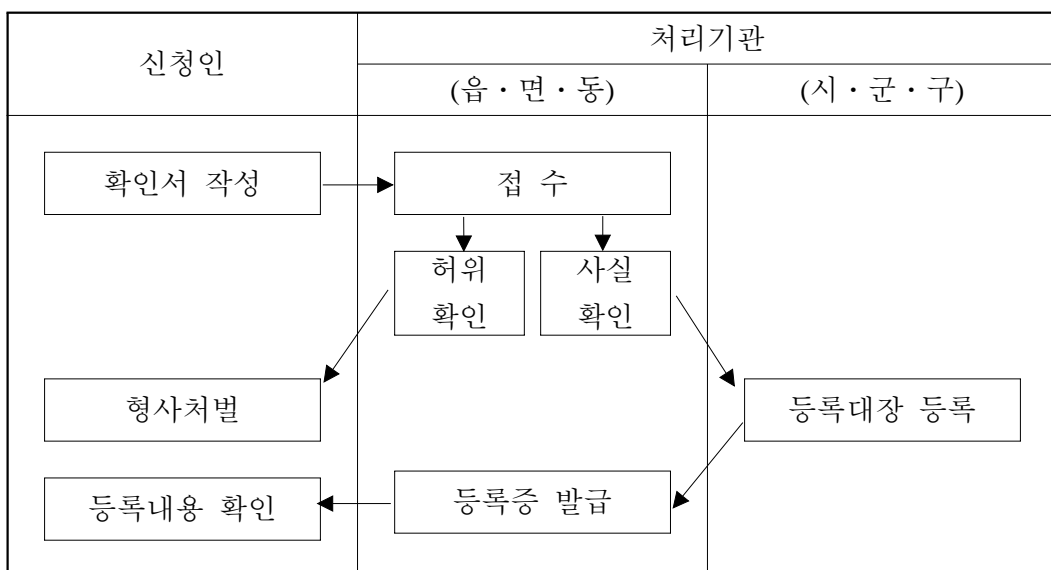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²)	농지이용면적(m ²)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을 제외한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법규	<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략)</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가. (생략)</p> <p>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p> <p>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p> <p>2) (생략)</p> <p>4. (생략)</p>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 명)	생년 월일 (법인 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m ²)			농지이용 현황(m ²)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m ²)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안(m ²)	밖(m ²)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변경 전					변경 후					대상농지여부				
	읍· 면	리· 동	지번 (임시 지번)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⑦ 면적(㎡)		⑧ 농지이용면적(㎡)			⑨ 1998년 ~ 2000년 재배작 물	⑩ 1997년 이전 논 농업 기간	⑪ 농지전 등 용 여부	⑫ 개발 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⑬ 전(前) 경작자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합계																				
<p>『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p>															⑭ 읍·면·동장 확인란					
수수료																				
없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 신청인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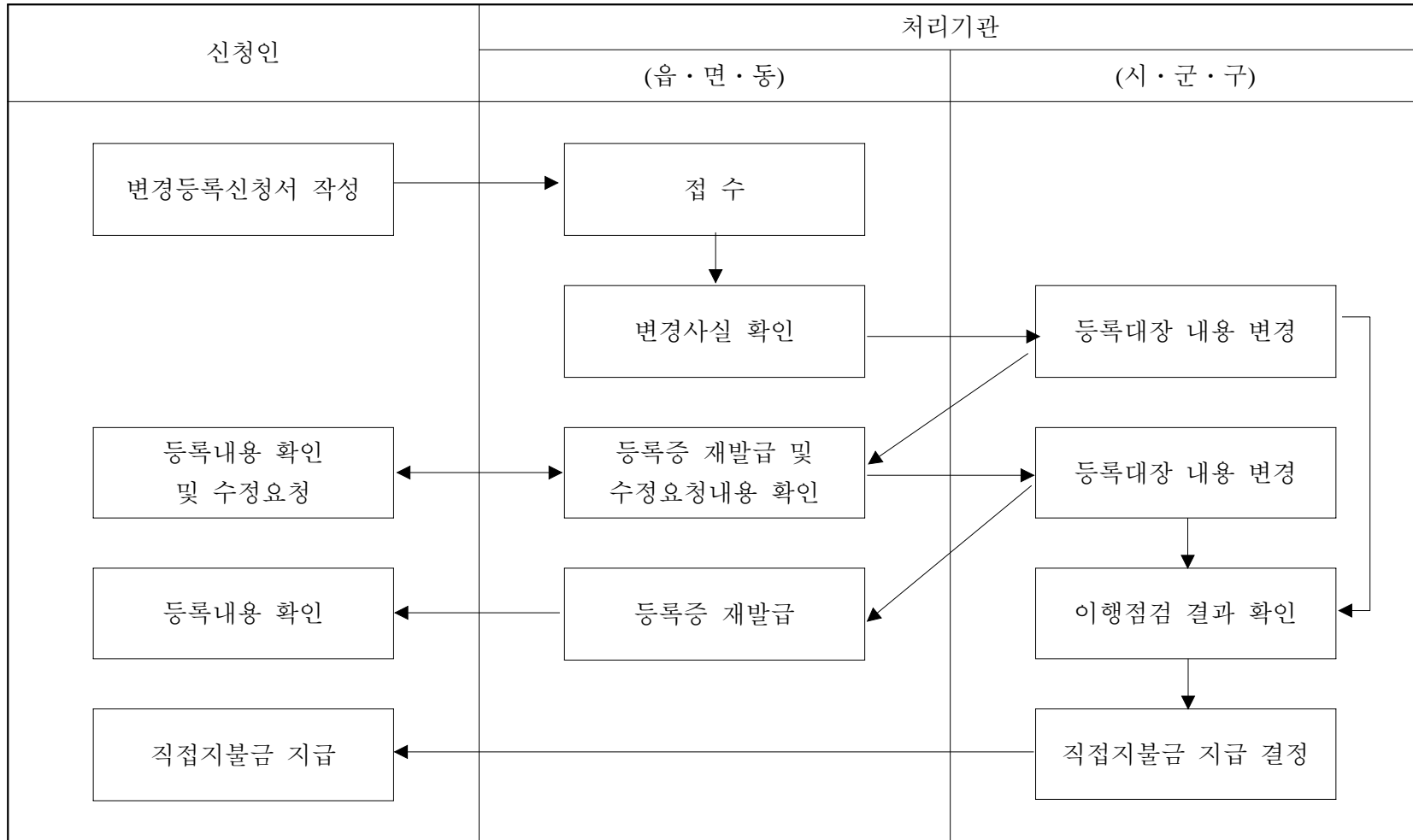
- ①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란은 농지면적, 재배면적이 변경된 농지, 신규 신청하는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농지 중 양수(양도)·임차(임대)·사용차(사용대)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 ④란은 농지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 ⑤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⑥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 ⑦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⑧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 ⑨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⑩란은 ⑨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 벼·미나리·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 ⑪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x”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⑫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x”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⑬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를 양도·임대·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 ⑭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3호의 서류는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1. 발급된 등록증
-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등록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가) 또는 2)가)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다)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라)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마)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나) 1)나)부터 마)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②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m ²)		⑥ 농지이용면적(m ²)			⑦ 전(前)경작자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벼 재배	벼 이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⑧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p>「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⑩ 읍·면·동장 확인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등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div>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제2쪽)

※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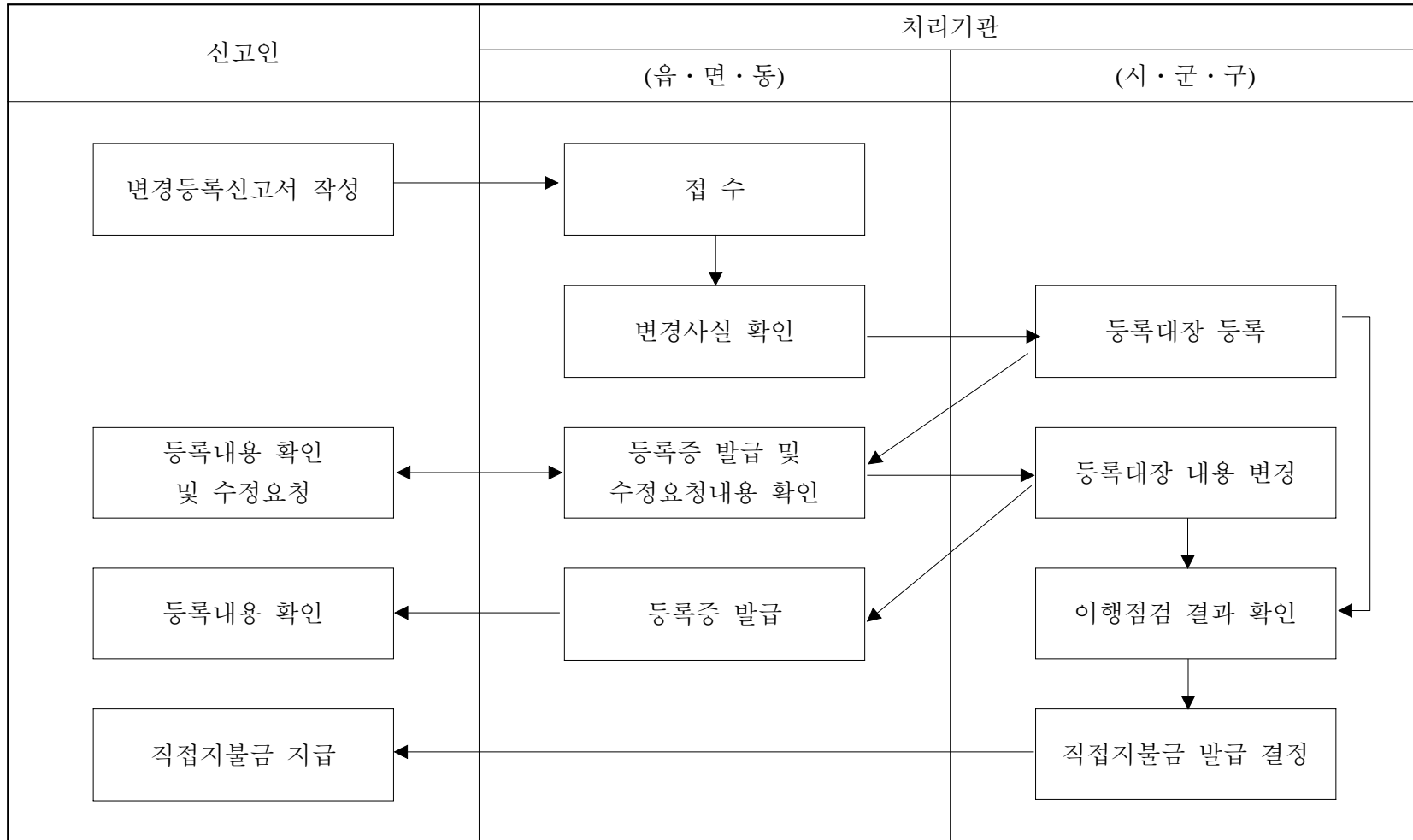
- ①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 ⑦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 ⑧란은 신고인의 거래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 ⑨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 ⑩란은 신고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제2호의 서류 중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다)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라)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마)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나) 1)나)부터 마)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및 고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63
- 농지법 / 65
- 하천법 / 6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71
- 택지개발촉진법 / 73
- 농어촌정비법 / 74
- 자연재해대책법 / 7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79
- 소비자기본법 / 79
- 양곡관리법 / 80
- 국가재정법 / 8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8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88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90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92
- 소득세법 / 93
- 전자정부법 / 93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고시 / 94
-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 95
- 농촌지역 고시 / 96
-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9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28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9조·제70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

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용자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

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 가. 제방·호안·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다.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수문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④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⑤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자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채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삭제
-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연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 나.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 라.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사업
 - 마. 저수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 사업
 - 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차. 그 밖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7의2.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7의3.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해당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8. “환지”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10.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함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함은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이라 함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구호금품”이라 함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11.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라 함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라 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 가.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
 -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제정·운영
 - 라. 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
 -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삭제
 4. 설해대책
 - 가. 설해예방대책
 - 나. 각종 제설자재·물자 비축
 - 다. 그 밖에 설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나.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관리유지
 -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극복대책
 -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 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체계 구축
 - 다.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라. 비상대처계획수립
 7.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방법,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유형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⑥ 국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한 때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채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 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⑧ 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동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 ④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 삭제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 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③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⑤ 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 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 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 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축산물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6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
2. 제1호외의 농업인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농지

제12조(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업농육성대상자
 - 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전업농업인으로서의 정착이 가능한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 나. 영농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업법인

벼·감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을 주작목으로 할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선정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 전자정부법

제18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②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여야 한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고시

● 농림부 고시 제2005-76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산부터 2007년산 쌀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표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5년 월 일
농 립 부 장 관

1. 목표가격 : 170,083원/쌀 80킬로그램(kg)
2. 적용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중 벼를 재배한 자
3.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정방식(쌀 80kg기준)
 - 목표가격과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 농림부 고시 제2006-48호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이후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0일
농 립 부 장 관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746,000 원/ ha(10,000m²)
 - 농업진흥지역 밖 : 597,000 원/ ha(10,000m²)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1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농림부고시 제1995-86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농림부고시 제2007-66호, 2007.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8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단계 농산물에 적용할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출하시점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생산단계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별표2 중 당해농산물이 속한 대분류(농산물의 분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 제④항을 따르며,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의 경우에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한다)의 출하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수치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2 중 최저기준의 출하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수치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콩나물 및 녹두나물의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기타 유해물질)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아플라톡신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안)

(단위 : mg/kg)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곡류	곡류	쌀	Buprofezin	1.40	1.35	1.31	1.27	1.22	1.18	1.14	1.11	1.07	1.03	1.0
곡류	곡류	쌀	Carbendazim	0.14	0.13	0.13	0.12	0.12	0.12	0.11	0.11	0.11	0.10	0.1
곡류	곡류	쌀	Cartap	0.14	0.14	0.13	0.13	0.12	0.12	0.12	0.11	0.11	0.10	0.1
곡류	곡류	쌀	Chlorpyrifos- methyl	0.13	0.13	0.12	0.12	0.12	0.11	0.11	0.11	0.11	0.10	0.1
곡류	곡류	쌀	Ethofenprox	0.70	0.67	0.65	0.63	0.61	0.59	0.57	0.55	0.53	0.52	0.5
곡류	곡류	쌀	Imidacloprid	0.07	0.07	0.07	0.06	0.06	0.06	0.06	0.06	0.05	0.05	0.05
과실류	감귤류	감귤	Carbendazim	13.68	12.79	11.96	11.19	10.46	9.79	9.15	8.56	8.00	7.49	7.0
과실류	감귤류	감귤	Cyhalothrin	0.84	0.80	0.76	0.72	0.68	0.65	0.62	0.58	0.56	0.53	0.5
과실류	감귤류	감귤	Dimethoate	2.83	2.74	2.64	2.55	2.46	2.38	2.30	2.22	2.14	2.07	2.0
과실류	감귤류	감귤	Ethofenprox	1.57	1.50	1.43	1.37	1.31	1.25	1.20	1.14	1.09	1.05	1.0
과실류	감귤류	감귤	Fenbutatin-oxide	6.52	6.35	6.19	6.02	5.87	5.71	5.56	5.42	5.27	5.13	5.0
과실류	감귤류	감귤	Fenvalerate	0.58	0.52	0.47	0.42	0.38	0.34	0.31	0.27	0.25	0.22	0.2
과실류	감귤류	감귤	Mecarbam	3.38	3.21	3.05	2.89	2.74	2.60	2.47	2.34	2.22	2.11	2.0
과실류	감귤류	감귤	Tetradifon	3.36	3.19	3.03	2.87	2.73	2.59	2.46	2.34	2.22	2.11	2.0
과실류	감귤류	유자	Carbendazim	13.68	12.79	11.96	11.19	10.46	9.79	9.15	8.56	8.00	7.49	7.0
과실류	이과류	감	Carbendazim	4.18	3.88	3.60	3.35	3.11	2.89	2.68	2.49	2.32	2.15	2.0
과실류	이과류	감	Chlorothalonil	1.35	1.31	1.27	1.23	1.20	1.16	1.13	1.09	1.06	1.03	1.0
과실류	이과류	감	Chlorpyrifos	1.08	1.00	0.93	0.86	0.80	0.74	0.68	0.63	0.58	0.54	0.5
과실류	이과류	감	Cyhalothrin	1.35	1.22	1.11	1.00	0.91	0.82	0.74	0.67	0.61	0.55	0.5
과실류	이과류	감	Cypermethrin	3.49	3.30	3.13	2.96	2.80	2.64	2.50	2.36	2.24	2.11	2.0
과실류	이과류	감	Deltamethrin	0.16	0.15	0.15	0.14	0.13	0.13	0.12	0.12	0.11	0.10	0.1
과실류	이과류	감	Myclobutanil	0.76	0.73	0.70	0.67	0.64	0.62	0.59	0.57	0.54	0.52	0.5
과실류	이과류	감	Pirimiphos-methyl	4.43	3.82	3.29	2.83	2.44	2.10	1.81	1.56	1.35	1.16	1.0
과실류	이과류	배	Acephate	1.32	1.28	1.25	1.21	1.18	1.15	1.12	1.09	1.06	1.03	1.0
과실류	이과류	배	Bitertanol	1.18	1.10	1.03	0.96	0.90	0.84	0.79	0.73	0.69	0.64	0.6
과실류	이과류	배	Chlorpyrifos	0.88	0.83	0.79	0.74	0.70	0.66	0.63	0.59	0.56	0.53	0.5
과실류	이과류	배	Clofentezine	0.66	0.64	0.62	0.61	0.59	0.57	0.56	0.54	0.53	0.51	0.5
과실류	이과류	배	Cyhexatin	3.26	3.11	2.96	2.82	2.68	2.55	2.43	2.32	2.21	2.10	2.0
과실류	이과류	배	Cypermethrin	2.88	2.78	2.68	2.58	2.49	2.40	2.32	2.23	2.15	2.07	2.0
과실류	이과류	배	Fenarimol	0.40	0.39	0.38	0.37	0.36	0.35	0.34	0.33	0.32	0.31	0.3
과실류	이과류	배	Fenpropathrin	6.65	6.46	6.28	6.10	5.93	5.77	5.60	5.45	5.29	5.14	5.0
과실류	이과류	배	Fenvalerate	2.56	2.50	2.44	2.38	2.32	2.26	2.21	2.15	2.10	2.05	2.0
과실류	이과류	배	Hexaconazole	0.89	0.84	0.79	0.75	0.71	0.67	0.63	0.59	0.56	0.53	0.5
과실류	이과류	배	Hexythiazox	0.46	0.44	0.42	0.41	0.39	0.37	0.36	0.34	0.33	0.31	0.3
과실류	이과류	배	Methamidophos	0.13	0.13	0.12	0.12	0.12	0.11	0.11	0.11	0.11	0.10	0.1
과실류	이과류	배	Penconazole	0.40	0.38	0.35	0.33	0.30	0.28	0.26	0.25	0.23	0.21	0.2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과실류	이과류	배	Phenthoate	0.56	0.51	0.46	0.41	0.37	0.34	0.30	0.27	0.25	0.22	0.2
과실류	이과류	배	Tetradifon	6.43	6.27	6.12	5.96	5.82	5.67	5.53	5.39	5.26	5.13	5.0
과실류	이과류	배	Triflumizole	2.53	2.47	2.41	2.36	2.30	2.25	2.20	2.15	2.10	2.05	2.0
과실류	이과류	사과	Acetamidprid	0.44	0.42	0.41	0.39	0.38	0.36	0.35	0.34	0.32	0.31	0.3
과실류	이과류	사과	Azoxystrobin	1.02	0.95	0.89	0.83	0.77	0.72	0.67	0.62	0.58	0.54	0.5
과실류	이과류	사과	Bifenthrin	0.65	0.64	0.62	0.60	0.59	0.57	0.56	0.54	0.53	0.51	0.5
과실류	이과류	사과	Carbendazim	3.15	3.01	2.88	2.75	2.63	2.51	2.40	2.29	2.19	2.09	2.0
과실류	이과류	사과	Chlorpyrifos	1.76	1.66	1.57	1.49	1.40	1.33	1.25	1.19	1.12	1.06	1.0
과실류	이과류	사과	Clofentezine	1.32	1.28	1.25	1.21	1.18	1.15	1.12	1.09	1.06	1.03	1.0
과실류	이과류	사과	Cyfluthrin	0.76	0.73	0.70	0.67	0.64	0.62	0.59	0.57	0.54	0.52	0.5
과실류	이과류	사과	Cyhalothrin	0.30	0.29	0.27	0.26	0.25	0.24	0.23	0.23	0.22	0.21	0.2
과실류	이과류	사과	Cypermethrin	2.88	2.78	2.68	2.58	2.49	2.40	2.32	2.23	2.15	2.07	2.0
과실류	이과류	사과	DDVP	0.34	0.30	0.27	0.24	0.21	0.18	0.16	0.14	0.13	0.11	0.1
과실류	이과류	사과	Deltamethrin	0.32	0.31	0.29	0.28	0.27	0.25	0.24	0.23	0.22	0.21	0.2
과실류	이과류	사과	Diazinon	1.25	1.14	1.04	0.95	0.87	0.79	0.72	0.66	0.60	0.55	0.5
과실류	이과류	사과	Difenoconazole	1.65	1.57	1.49	1.42	1.35	1.28	1.22	1.16	1.11	1.05	1.0
과실류	이과류	사과	Fenitrothion	0.73	0.70	0.68	0.65	0.63	0.60	0.58	0.56	0.54	0.52	0.5
과실류	이과류	사과	Fenpropathrin	6.65	6.46	6.28	6.10	5.93	5.77	5.60	5.45	5.29	5.14	5.0
과실류	이과류	사과	Fenvalerate	2.56	2.50	2.44	2.38	2.32	2.26	2.21	2.15	2.10	2.05	2.0
과실류	이과류	사과	Fluvalinate	0.98	0.92	0.86	0.80	0.75	0.70	0.65	0.61	0.57	0.53	0.5
과실류	이과류	사과	Folpet	8.97	8.46	7.98	7.53	7.10	6.70	6.32	5.96	5.62	5.30	5.0
과실류	이과류	사과	Hexaconazole	0.13	0.13	0.12	0.12	0.12	0.11	0.11	0.11	0.11	0.10	0.1
과실류	이과류	사과	Hexythiazox	0.46	0.44	0.42	0.41	0.39	0.37	0.36	0.34	0.33	0.31	0.3
과실류	이과류	사과	Iprodione	14.01	13.54	13.09	12.66	12.24	11.84	11.44	11.06	10.70	10.34	10.0
과실류	이과류	사과	Methidathion	0.61	0.56	0.53	0.49	0.46	0.43	0.40	0.37	0.35	0.32	0.3
과실류	이과류	사과	Parathion	0.45	0.44	0.42	0.40	0.38	0.37	0.35	0.34	0.33	0.31	0.3
과실류	이과류	사과	Penconazole	0.35	0.33	0.31	0.30	0.28	0.26	0.25	0.24	0.22	0.21	0.2
과실류	이과류	사과	Phenthoate	0.51	0.47	0.43	0.39	0.35	0.32	0.29	0.27	0.24	0.22	0.2
과실류	이과류	사과	Pirimiphos-methyl	8.86	7.63	6.58	5.67	4.88	4.21	3.63	3.13	2.69	2.32	2.0
과실류	이과류	사과	Prochloraz	0.72	0.70	0.67	0.65	0.62	0.60	0.58	0.56	0.54	0.52	0.5
과실류	이과류	사과	Pyridaben	1.53	1.46	1.40	1.35	1.29	1.24	1.18	1.14	1.09	1.04	1.0
과실류	이과류	사과	Tolylfluanid	6.86	6.64	6.44	6.24	6.04	5.86	5.67	5.50	5.33	5.16	5.0
과실류	이과류	사과	Triflumizole	2.53	2.47	2.41	2.36	2.30	2.25	2.20	2.15	2.10	2.05	2.0
과실류	장과류	딸기	Azoxystrobin	5.18	4.40	3.73	3.16	2.68	2.28	1.93	1.64	1.39	1.18	1.0
과실류	장과류	딸기	Boscalid	12.90	11.74	10.67	9.71	8.83	8.03	7.31	6.64	6.04	5.50	5.0
과실류	장과류	딸기	Carbendazim	32.90	27.25	22.57	18.69	15.48	12.83	10.62	8.80	7.29	6.04	5.0
과실류	장과류	딸기	Chlorfenapyr	2.34	2.01	1.72	1.47	1.26	1.08	0.93	0.79	0.68	0.58	0.5
과실류	장과류	딸기	Chlorothalonil	2.91	2.62	2.35	2.11	1.90	1.71	1.53	1.38	1.24	1.11	1.0
과실류	장과류	딸기	Difenoconazole	9.64	7.17	5.33	3.97	2.95	2.20	1.63	1.21	0.90	0.67	0.5
과실류	장과류	딸기	Fenarimol	23.88	17.39	12.66	9.22	6.71	4.89	3.56	2.59	1.89	1.37	1.0
과실류	장과류	딸기	Fenhexamid	11.25	9.46	7.96	6.70	5.64	4.74	3.99	3.36	2.83	2.38	2.0
과실류	장과류	딸기	Fenpropathrin	6.49	5.03	3.89	3.01	2.33	1.80	1.39	1.08	0.83	0.65	0.5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과실류	장과류	딸기	Flufenoxuron	5.66	4.22	3.15	2.35	1.75	1.30	0.97	0.72	0.54	0.40	0.3
과실류	장과류	딸기	Flutolanil	12.15	11.12	10.17	9.31	8.52	7.79	7.13	6.53	5.97	5.46	5.0
과실류	장과류	딸기	Indoxacarb	18.01	13.49	10.10	7.57	5.67	4.24	3.18	2.38	1.78	1.34	1.0
과실류	장과류	딸기	Iprodione	16.55	15.74	14.97	14.23	13.53	12.87	12.23	11.63	11.06	10.52	10.0
과실류	장과류	딸기	Kresoxim-methyl	6.97	5.74	4.73	3.89	3.21	2.64	2.17	1.79	1.47	1.21	1.0
과실류	장과류	딸기	Procymidone	41.45	35.96	31.19	27.06	23.47	20.36	17.66	15.32	13.29	11.53	10.0
과실류	장과류	딸기	Tetraconazole	8.17	6.63	5.37	4.35	3.53	2.86	2.32	1.88	1.52	1.23	1.0
과실류	장과류	딸기	Triflumizole	9.54	8.16	6.98	5.97	5.11	4.37	3.74	3.20	2.73	2.34	2.0
과실류	장과류	딸기	Vinclozolin	69.66	57.37	47.25	38.91	32.05	26.39	21.74	17.90	14.74	12.14	10.0
과실류	장과류	포도	Acetamiprid	1.54	1.47	1.41	1.35	1.29	1.24	1.19	1.14	1.09	1.04	1.0
과실류	장과류	포도	Azoxystrobin	1.67	1.59	1.51	1.43	1.36	1.29	1.23	1.17	1.11	1.05	1.0
과실류	장과류	포도	Boscalid	6.96	6.74	6.52	6.30	6.10	5.90	5.71	5.52	5.34	5.17	5.0
과실류	장과류	포도	Carbendazim	2.99	2.68	2.40	2.15	1.93	1.73	1.55	1.39	1.25	1.12	1.0
과실류	장과류	포도	Chlorothalonil	7.63	7.32	7.01	6.72	6.44	6.18	5.92	5.68	5.44	5.22	5.0
과실류	장과류	포도	Clothianidin	4.51	4.16	3.83	3.53	3.26	3.00	2.77	2.55	2.35	2.17	2.0
과실류	장과류	포도	Diazinon	0.42	0.37	0.32	0.27	0.24	0.21	0.18	0.15	0.13	0.12	0.1
과실류	장과류	포도	Difenoconazole	1.89	1.78	1.67	1.56	1.47	1.38	1.29	1.21	1.14	1.07	1.0
과실류	장과류	포도	Dithianon	4.16	4.03	3.90	3.77	3.65	3.53	3.42	3.31	3.20	3.10	3.0
과실류	장과류	포도	Fenarimol	0.79	0.72	0.65	0.59	0.54	0.49	0.44	0.40	0.36	0.33	0.3
과실류	장과류	포도	Fenhexamid	3.88	3.78	3.68	3.59	3.50	3.41	3.32	3.24	3.16	3.08	3.0
과실류	장과류	포도	Fenitrothion	1.31	1.19	1.08	0.98	0.89	0.81	0.74	0.67	0.61	0.55	0.5
과실류	장과류	포도	Fluquinconazole	1.31	1.28	1.24	1.21	1.18	1.15	1.11	1.09	1.06	1.03	1.0
과실류	장과류	포도	Folpet	8.97	8.46	7.98	7.53	7.10	6.70	6.32	5.96	5.62	5.30	5.0
과실류	장과류	포도	Iprodione	16.92	16.05	15.23	14.45	13.71	13.01	12.34	11.71	11.11	10.54	10.0
과실류	장과류	포도	Kresoxim-methyl	8.04	7.67	7.31	6.97	6.65	6.34	6.05	5.77	5.50	5.24	5.0
과실류	장과류	포도	Mepanipyrim	11.35	10.46	9.64	8.88	8.18	7.53	6.94	6.39	5.89	5.43	5.0
과실류	장과류	포도	Metalaxyl	1.42	1.37	1.33	1.28	1.24	1.19	1.15	1.11	1.07	1.04	1.0
과실류	장과류	포도	Myclobutanil	2.84	2.74	2.64	2.55	2.47	2.38	2.30	2.22	2.14	2.07	2.0
과실류	장과류	포도	Oxadixyl	4.07	3.79	3.53	3.29	3.06	2.85	2.66	2.47	2.31	2.15	2.0
과실류	장과류	포도	Procymidone	7.30	7.03	6.77	6.52	6.28	6.04	5.82	5.60	5.39	5.19	5.0
과실류	장과류	포도	Pyrimethanil	6.71	6.51	6.33	6.14	5.96	5.79	5.62	5.46	5.30	5.15	5.0
과실류	장과류	포도	Tebuconazole	1.54	1.47	1.41	1.35	1.29	1.24	1.19	1.14	1.09	1.04	1.0
과실류	장과류	포도	Triflumizole	3.53	3.33	3.15	2.98	2.81	2.66	2.51	2.37	2.24	2.12	2.0
과실류	장과류	포도	Zoxamide	0.52	0.52	0.52	0.52	0.51	0.51	0.51	0.51	0.50	0.50	0.5
과실류	핵과류	매실	Acetamiprid	2.51	2.29	2.09	1.90	1.74	1.58	1.44	1.32	1.20	1.10	1.0
과실류	핵과류	매실	Chlorpyrifos	3.94	3.43	2.99	2.61	2.28	1.98	1.73	1.51	1.32	1.15	1.0
과실류	핵과류	매실	Clothianidin	0.86	0.82	0.77	0.73	0.69	0.66	0.62	0.59	0.56	0.53	0.5
과실류	핵과류	매실	Deltamethrin	0.13	0.12	0.11	0.10	0.09	0.08	0.07	0.07	0.06	0.05	0.05
과실류	핵과류	매실	Dinotefuran	1.54	1.26	1.03	0.84	0.68	0.56	0.45	0.37	0.30	0.25	0.2
과실류	핵과류	매실	Fenbuconazole	4.71	4.33	3.97	3.64	3.34	3.07	2.82	2.59	2.37	2.18	2.0
과실류	핵과류	매실	Fenitrothion	2.83	2.17	1.66	1.28	0.98	0.75	0.58	0.44	0.34	0.26	0.2
과실류	핵과류	매실	Imidacloprid	2.46	2.25	2.06	1.88	1.72	1.57	1.43	1.31	1.20	1.09	1.0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과실류	핵과류	매실	Thiamethoxam	2.84	2.56	2.31	2.08	1.87	1.69	1.52	1.37	1.23	1.11	1.0
과실류	핵과류	매실	Trichlorfon	0.88	0.83	0.78	0.74	0.70	0.66	0.63	0.59	0.56	0.53	0.5
과실류	핵과류	매실	Trifloxystrobin	4.63	4.26	3.91	3.60	3.31	3.04	2.80	2.57	2.37	2.18	2.0
과실류	핵과류	복숭아	Bitertanol	2.40	2.20	2.02	1.85	1.69	1.55	1.42	1.30	1.19	1.09	1.0
과실류	핵과류	복숭아	Carbaryl	38.96	34.01	29.68	25.91	22.61	19.74	17.23	15.04	13.13	11.46	10.0
과실류	핵과류	복숭아	Difenoconazole	3.75	3.07	2.51	2.05	1.68	1.37	1.12	0.92	0.75	0.61	0.5
과실류	핵과류	복숭아	Flusilazole	0.89	0.84	0.79	0.75	0.71	0.67	0.63	0.59	0.56	0.53	0.5
과실류	핵과류	복숭아	Hexaconazole	6.60	5.10	3.94	3.04	2.35	1.82	1.40	1.08	0.84	0.65	0.5
과실류	핵과류	복숭아	Triflumizole	40.90	30.25	22.37	16.54	12.23	9.04	6.69	4.95	3.66	2.70	2.0
과실류	핵과류	복숭아	Vinclozolin	9.61	9.00	8.43	7.90	7.40	6.93	6.49	6.08	5.70	5.34	5.0
서류	서류	감자	Imidacloprid	0.34	0.33	0.33	0.33	0.32	0.32	0.31	0.31	0.31	0.30	0.3
인삼류		수삼	Azoxystrobin	0.59	0.58	0.57	0.56	0.55	0.54	0.54	0.53	0.52	0.51	0.5
인삼류		수삼	Carbendazim	0.23	0.23	0.22	0.22	0.22	0.21	0.21	0.21	0.21	0.20	0.2
인삼류		수삼	Chlorothalonil	0.13	0.13	0.12	0.12	0.12	0.11	0.11	0.11	0.11	0.10	0.1
인삼류		수삼	Cyazofamid	0.33	0.33	0.33	0.32	0.32	0.32	0.31	0.31	0.31	0.30	0.3
인삼류		수삼	Cypermethrin	0.11	0.11	0.11	0.11	0.10	0.10	0.10	0.10	0.10	0.10	0.1
인삼류		수삼	Cyprodinil	2.25	2.22	2.20	2.17	2.15	2.12	2.10	2.07	2.05	2.02	2.0
인삼류		수삼	Diethofencarb	0.43	0.42	0.40	0.39	0.37	0.36	0.35	0.33	0.32	0.31	0.3
인삼류		수삼	Difenoconazole	0.26	0.25	0.25	0.24	0.23	0.23	0.22	0.22	0.21	0.21	0.2
인삼류		수삼	Fenhexamid	0.44	0.42	0.40	0.39	0.38	0.36	0.35	0.34	0.32	0.31	0.3
인삼류		수삼	Fludioxonil	0.55	0.54	0.54	0.53	0.53	0.52	0.52	0.51	0.51	0.50	0.5
인삼류		수삼	Flutolanil	1.11	1.10	1.09	1.08	1.06	1.05	1.04	1.03	1.02	1.01	1.0
인삼류		수삼	kresoxim-methyl	0.44	0.40	0.37	0.35	0.32	0.30	0.27	0.25	0.23	0.22	0.2
인삼류		수삼	Metalaxyl	0.61	0.60	0.59	0.58	0.56	0.55	0.54	0.53	0.52	0.51	0.5
인삼류		수삼	Pencycuron	0.91	0.89	0.86	0.84	0.82	0.80	0.78	0.76	0.74	0.72	0.7
인삼류		수삼	Pyrimethanil	1.02	1.01	1.01	1.01	1.01	1.01	1.01	1.00	1.00	1.00	1.0
인삼류		수삼	Thifluzamide	1.15	1.13	1.12	1.10	1.09	1.07	1.06	1.04	1.03	1.01	1.0
인삼류		수삼	Trifloxystrobin	0.15	0.15	0.14	0.13	0.13	0.12	0.12	0.11	0.11	0.10	0.1
채소류	과채류	가지	Azoxystrobin	3.39	2.89	2.47	2.11	1.80	1.54	1.32	1.12	0.96	0.82	0.7
채소류	과채류	가지	Bitertanol	1.81	1.59	1.40	1.23	1.08	0.95	0.84	0.74	0.65	0.57	0.5
채소류	과채류	가지	Carbendazim	1.53	1.37	1.22	1.09	0.98	0.87	0.78	0.70	0.63	0.56	0.5
채소류	과채류	가지	Chlorfenapyr	0.94	0.88	0.83	0.78	0.73	0.69	0.64	0.60	0.57	0.53	0.5
채소류	과채류	가지	Chlorothalonil	63.22	46.61	34.36	25.34	18.68	13.77	10.15	7.49	5.52	4.07	3.0
채소류	과채류	가지	Clothianidin	2.66	2.14	1.72	1.38	1.11	0.89	0.72	0.58	0.46	0.37	0.3
채소류	과채류	가지	Deltamethrin	3.63	2.71	2.03	1.52	1.14	0.85	0.64	0.48	0.36	0.27	0.2
채소류	과채류	가지	Diethofencarb	21.22	15.63	11.52	8.49	6.25	4.61	3.39	2.50	1.84	1.36	1.0
채소류	과채류	가지	Fenarimol	0.45	0.44	0.42	0.40	0.38	0.37	0.35	0.34	0.33	0.31	0.3
채소류	과채류	가지	Fenazaquin	12.87	8.48	5.59	3.69	2.43	1.60	1.06	0.70	0.46	0.30	0.2
채소류	과채류	가지	Fludioxonil	3.46	2.60	1.96	1.47	1.11	0.83	0.63	0.47	0.35	0.27	0.2
채소류	과채류	가지	Fluvalinate	1.92	1.68	1.47	1.28	1.12	0.98	0.86	0.75	0.65	0.57	0.5
채소류	과채류	가지	Methidathion	12.42	7.67	4.74	2.92	1.81	1.11	0.69	0.42	0.26	0.16	0.1
채소류	과채류	가지	Procyimdone	3.15	3.01	2.88	2.75	2.63	2.51	2.40	2.29	2.19	2.09	2.0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채소류	과채류	가지	Pyrimethanil	32.11	24.33	18.43	13.96	10.58	8.01	6.07	4.60	3.48	2.64	2.0
채소류	과채류	가지	Pyriproxyfen	5.62	4.73	3.98	3.35	2.82	2.37	2.00	1.68	1.41	1.19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Acephate	5.36	5.20	5.05	4.91	4.77	4.63	4.50	4.37	4.24	4.12	4.0
채소류	과채류	고추	Acetamiprid	4.57	4.21	3.88	3.57	3.28	3.02	2.78	2.56	2.36	2.17	2.0
채소류	과채류	고추	Azoxystrobin	8.79	7.58	6.53	5.64	4.86	4.19	3.62	3.12	2.69	2.32	2.0
채소류	과채류	고추	Bifenthrin	0.67	0.65	0.63	0.61	0.60	0.58	0.56	0.55	0.53	0.51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Boscalid	5.51	5.19	4.88	4.59	4.32	4.07	3.83	3.60	3.39	3.19	3.0
채소류	과채류	고추	Carbaryl	2.85	2.40	2.01	1.69	1.42	1.19	1.00	0.84	0.71	0.60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Carbendazim	6.60	6.42	6.25	6.07	5.91	5.75	5.59	5.43	5.29	5.14	5.0
채소류	과채류	고추	Chlorfenapyr	1.22	1.15	1.09	1.03	0.98	0.92	0.87	0.83	0.78	0.74	0.7
채소류	과채류	고추	Chlorothalonil	19.89	17.33	15.09	13.15	11.45	9.97	8.69	7.57	6.59	5.74	5.0
채소류	과채류	고추	Chlorpyrifos	1.41	1.27	1.14	1.03	0.93	0.84	0.76	0.68	0.61	0.55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Chlorpyrifos- methyl	0.23	0.21	0.20	0.18	0.17	0.15	0.14	0.13	0.12	0.11	0.1
채소류	과채류	고추	Clothianidin	5.68	5.11	4.61	4.15	3.74	3.37	3.04	2.73	2.46	2.22	2.0
채소류	과채류	고추	Cyfluthrin	2.87	2.58	2.32	2.09	1.88	1.69	1.52	1.37	1.23	1.11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Cyhalothrin	0.90	0.85	0.80	0.75	0.71	0.67	0.63	0.60	0.56	0.53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Cymoxanil	92.10	54.67	32.45	19.26	11.43	6.79	4.03	2.39	1.42	0.84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Cypermethrin	0.54	0.53	0.53	0.52	0.52	0.52	0.51	0.51	0.51	0.50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Deltamethrin	0.97	0.82	0.70	0.60	0.51	0.44	0.38	0.32	0.27	0.23	0.2
채소류	과채류	고추	Diazinon	2.28	1.96	1.68	1.44	1.24	1.07	0.92	0.79	0.68	0.58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Dichlofluanid	5.34	4.84	4.39	3.98	3.61	3.27	2.96	2.69	2.43	2.21	2.0
채소류	과채류	고추	Difenoconazole	0.44	0.42	0.41	0.39	0.38	0.36	0.35	0.34	0.32	0.31	0.3
채소류	과채류	고추	Diflubenzuron	2.11	1.96	1.81	1.68	1.56	1.45	1.35	1.25	1.16	1.08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Dimethomorph	1.69	1.50	1.32	1.17	1.04	0.92	0.81	0.72	0.64	0.56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EBDC	5.26	4.16	3.28	2.60	2.05	1.62	1.28	1.01	0.80	0.63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Fenitrothion	0.98	0.78	0.62	0.49	0.39	0.31	0.25	0.20	0.16	0.13	0.1
채소류	과채류	고추	Fenpropathrin	0.73	0.70	0.68	0.65	0.63	0.60	0.58	0.56	0.54	0.52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Fenvalerate	2.63	2.39	2.17	1.97	1.79	1.62	1.47	1.34	1.21	1.10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Fluvalinate	0.30	0.27	0.24	0.22	0.19	0.17	0.16	0.14	0.12	0.11	0.1
채소류	과채류	고추	Folpet	7.40	7.12	6.84	6.58	6.33	6.08	5.85	5.62	5.41	5.20	5.0
채소류	과채류	고추	Imidacloprid	12.62	9.79	7.60	5.90	4.58	3.55	2.76	2.14	1.66	1.29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Indoxacarb	3.37	2.99	2.65	2.34	2.07	1.84	1.63	1.44	1.28	1.13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Iprodione	6.53	6.36	6.19	6.03	5.87	5.71	5.56	5.42	5.27	5.14	5.0
채소류	과채류	고추	Kresoxim-methyl	5.32	4.83	4.38	3.97	3.60	3.26	2.96	2.68	2.43	2.21	2.0
채소류	과채류	고추	Lufenuron	0.98	0.92	0.86	0.80	0.75	0.70	0.65	0.61	0.57	0.53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Mepanipyrim	1.71	1.51	1.34	1.18	1.05	0.92	0.82	0.72	0.64	0.57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Metalaxyl	3.40	3.01	2.66	2.36	2.09	1.85	1.63	1.44	1.28	1.13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Methamidophos	1.34	1.30	1.26	1.23	1.19	1.16	1.12	1.09	1.06	1.03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Methomyl	5.92	4.96	4.15	3.47	2.91	2.43	2.04	1.71	1.43	1.19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Myclobutanil	1.50	1.44	1.38	1.33	1.27	1.22	1.18	1.13	1.08	1.04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Oxadixyl	2.35	2.16	1.98	1.82	1.67	1.53	1.41	1.29	1.19	1.09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Procymidone	11.02	10.18	9.41	8.69	8.03	7.42	6.86	6.34	5.86	5.41	5.0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채소류	과채류	고추	Profenofos	3.73	3.50	3.29	3.09	2.91	2.73	2.57	2.41	2.27	2.13	2.0
채소류	과채류	고추	Pyraclostrobin	0.57	0.56	0.55	0.55	0.54	0.53	0.53	0.52	0.51	0.51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Pyridaben	1.35	1.26	1.18	1.11	1.04	0.97	0.91	0.85	0.80	0.75	0.7
채소류	과채류	고추	Pyrimethanil	1.46	1.40	1.35	1.30	1.25	1.21	1.16	1.12	1.08	1.04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Tebuconazole	2.24	2.07	1.91	1.76	1.62	1.50	1.38	1.27	1.17	1.08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Tetraconazole	2.19	2.03	1.88	1.73	1.60	1.48	1.37	1.27	1.17	1.08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Tolylfluand	4.97	4.54	4.15	3.78	3.45	3.15	2.88	2.63	2.40	2.19	2.0
채소류	과채류	고추	Triflumizole	8.78	7.06	5.68	4.57	3.68	2.96	2.38	1.92	1.54	1.24	1.0
채소류	과채류	고추	Triforine	2.30	1.97	1.69	1.46	1.25	1.07	0.92	0.79	0.68	0.58	0.5
채소류	과채류	고추	Vinclozolin	5.49	5.17	4.86	4.58	4.31	4.06	3.82	3.60	3.39	3.19	3.0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Acetamiprid	8.74	7.54	6.51	5.62	4.85	4.18	3.61	3.11	2.69	2.32	2.0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Chlorfenapyr	0.98	0.95	0.91	0.88	0.86	0.83	0.80	0.77	0.75	0.72	0.7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Chlorothalonil	19.78	17.23	15.02	13.09	11.41	9.94	8.67	7.55	6.58	5.74	5.0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Chlorpyrifos	1.24	1.14	1.04	0.95	0.86	0.79	0.72	0.66	0.60	0.55	0.5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Cypermethrin	2.00	1.74	1.52	1.32	1.15	1.00	0.87	0.76	0.66	0.57	0.5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Dimethomorph	1.61	1.43	1.27	1.13	1.01	0.90	0.80	0.71	0.63	0.56	0.5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Fipronil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Methomyl	6.96	5.73	4.72	3.89	3.20	2.64	2.17	1.79	1.47	1.21	1.0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Procymidone	8.27	7.86	7.48	7.11	6.76	6.43	6.11	5.81	5.53	5.26	5.0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Pyridaben	1.15	1.10	1.04	0.99	0.94	0.90	0.85	0.81	0.77	0.74	0.7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Tebuconazole	1.25	1.22	1.19	1.17	1.14	1.12	1.09	1.07	1.05	1.02	1.0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Tetraconazole	1.71	1.62	1.54	1.46	1.38	1.31	1.24	1.18	1.11	1.06	1.0
채소류	과채류	파리고추	Triflumizole	1.36	1.32	1.28	1.24	1.20	1.17	1.13	1.10	1.06	1.03	1.0
채소류	과채류	메론	Bitertanol	0.66	0.59	0.52	0.46	0.41	0.36	0.32	0.29	0.25	0.23	0.2
채소류	과채류	수박	Bitertanol	1.66	1.47	1.30	1.16	1.03	0.91	0.81	0.72	0.64	0.56	0.5
채소류	과채류	수박	Bromopropylate	2.35	2.16	1.98	1.82	1.67	1.53	1.41	1.29	1.19	1.09	1.0
채소류	과채류	수박	Oxadixyl	2.15	1.99	1.84	1.71	1.58	1.47	1.36	1.26	1.17	1.08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Acetamiprid	1.12	1.07	1.02	0.97	0.93	0.89	0.85	0.81	0.77	0.73	0.7
채소류	과채류	오이	Azoxystrobin	0.91	0.86	0.81	0.76	0.72	0.68	0.64	0.60	0.56	0.53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Bifenthrin	1.00	0.93	0.87	0.81	0.76	0.71	0.66	0.62	0.57	0.54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Bitertanol	3.36	2.78	2.30	1.90	1.57	1.30	1.07	0.89	0.73	0.60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Boscalid	6.55	4.81	3.53	2.60	1.91	1.40	1.03	0.76	0.56	0.41	0.3
채소류	과채류	오이	Buprofezin	47.80	32.47	22.06	14.98	10.18	6.91	4.70	3.19	2.17	1.47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Carbendazim	18.82	13.09	9.11	6.34	4.41	3.07	2.13	1.48	1.03	0.72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Chlorfenapyr	0.45	0.38	0.33	0.28	0.25	0.21	0.18	0.16	0.13	0.12	0.1
채소류	과채류	오이	Chlorothalonil	2.68	2.43	2.20	1.99	1.81	1.64	1.48	1.34	1.22	1.10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Chlorpyrifos	0.40	0.35	0.30	0.26	0.23	0.20	0.17	0.15	0.13	0.11	0.1
채소류	과채류	오이	Clothianidin	5.15	4.08	3.23	2.56	2.03	1.61	1.27	1.01	0.80	0.63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Deltamethrin	2.22	1.75	1.37	1.08	0.85	0.67	0.52	0.41	0.32	0.25	0.2
채소류	과채류	오이	Dichlofluand	62.02	48.21	37.48	29.14	22.65	17.61	13.69	10.64	8.27	6.43	5.0
채소류	과채류	오이	Difenoconazole	2.13	1.97	1.83	1.70	1.57	1.46	1.35	1.25	1.16	1.08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Dimethomorph	2.99	2.38	1.89	1.50	1.19	0.95	0.75	0.60	0.48	0.38	0.3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채소류	과채류	오이	EBDC	2.64	2.40	2.18	1.97	1.79	1.63	1.48	1.34	1.21	1.10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Ethofenprox	20.27	15.00	11.10	8.22	6.08	4.50	3.33	2.47	1.83	1.35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Famoxadone	2.46	1.99	1.61	1.31	1.06	0.86	0.70	0.56	0.46	0.37	0.3
채소류	과채류	오이	Fenarimol	0.41	0.35	0.31	0.27	0.23	0.20	0.18	0.15	0.13	0.12	0.1
채소류	과채류	오이	Fenhexamid	2.58	2.19	1.86	1.58	1.34	1.14	0.96	0.82	0.69	0.59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Fenvalerate	31.46	18.97	11.44	6.90	4.16	2.51	1.51	0.91	0.55	0.33	0.2
채소류	과채류	오이	Fludioxonil	15.86	10.24	6.61	4.27	2.76	1.78	1.15	0.74	0.48	0.31	0.2
채소류	과채류	오이	Fluquinconazole	0.29	0.26	0.24	0.21	0.19	0.17	0.15	0.14	0.12	0.11	0.1
채소류	과채류	오이	Folpet	8.97	8.46	7.98	7.53	7.10	6.70	6.32	5.96	5.62	5.30	5.0
채소류	과채류	오이	Hexaconazole	0.46	0.37	0.29	0.24	0.19	0.15	0.12	0.10	0.08	0.06	0.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Imidacloprid	4.19	3.39	2.74	2.21	1.79	1.45	1.17	0.95	0.76	0.62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Indoxacarb	9.02	6.76	5.06	3.79	2.84	2.12	1.59	1.19	0.89	0.67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Iprodione	20.44	17.75	15.42	13.40	11.64	10.11	8.78	7.63	6.63	5.76	5.0
채소류	과채류	오이	Kresoxim-methyl	4.41	3.55	2.86	2.30	1.85	1.49	1.19	0.96	0.77	0.62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Lufenuron	0.75	0.66	0.58	0.51	0.44	0.39	0.34	0.30	0.26	0.23	0.2
채소류	과채류	오이	Metalaxyl	1.88	1.77	1.66	1.56	1.46	1.37	1.29	1.21	1.13	1.07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Methidathion	0.29	0.24	0.20	0.17	0.14	0.12	0.10	0.08	0.07	0.06	0.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Methomyl	0.59	0.53	0.47	0.43	0.38	0.34	0.31	0.28	0.25	0.22	0.2
채소류	과채류	오이	Myclobutanil	14.70	11.24	8.59	6.56	5.02	3.83	2.93	2.24	1.71	1.31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Oxadixyl	2.15	1.99	1.84	1.71	1.58	1.47	1.36	1.26	1.17	1.08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Penconazole	1.07	0.84	0.67	0.53	0.41	0.33	0.26	0.20	0.16	0.13	0.1
채소류	과채류	오이	Procymidone	17.12	13.81	11.14	8.99	7.25	5.85	4.72	3.81	3.07	2.48	2.0
채소류	과채류	오이	Pyrimethanil	15.80	12.85	10.45	8.50	6.91	5.62	4.57	3.72	3.02	2.46	2.0
채소류	과채류	오이	Tetraconazole	4.52	3.89	3.34	2.88	2.47	2.13	1.83	1.57	1.35	1.16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Thiamethoxam	8.91	6.68	5.01	3.75	2.81	2.11	1.58	1.19	0.89	0.67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Tolyfluanid	61.88	43.90	31.15	22.10	15.68	11.12	7.89	5.60	3.97	2.82	2.0
채소류	과채류	오이	Triadimefon	2.04	1.62	1.28	1.02	0.81	0.64	0.51	0.40	0.32	0.25	0.2
채소류	과채류	오이	Trifloxystrobin	1.35	1.22	1.10	1.00	0.91	0.82	0.74	0.67	0.61	0.55	0.5
채소류	과채류	오이	Triflumizole	3.21	2.86	2.54	2.26	2.01	1.79	1.59	1.42	1.26	1.12	1.0
채소류	과채류	오이	Zoxamide	49.05	31.01	19.60	12.39	7.83	4.95	3.13	1.98	1.25	0.79	0.5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Acetamiprid	3.09	2.96	2.83	2.71	2.60	2.49	2.38	2.28	2.18	2.09	2.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Azoxystrobin	2.18	2.02	1.87	1.73	1.60	1.48	1.37	1.26	1.17	1.08	1.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Bifenthrin	0.51	0.49	0.46	0.44	0.41	0.39	0.37	0.35	0.33	0.32	0.3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Carbendazim	10.50	9.75	9.05	8.41	7.80	7.25	6.73	6.25	5.80	5.39	5.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Chlorothalonil	1.99	1.86	1.73	1.62	1.51	1.41	1.32	1.23	1.15	1.07	1.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Clothianidin	1.29	1.26	1.23	1.20	1.17	1.14	1.11	1.08	1.05	1.03	1.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Dichlofluanid	14.36	11.79	9.68	7.95	6.53	5.36	4.40	3.61	2.97	2.44	2.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Diethofencarb	6.76	6.23	5.74	5.30	4.88	4.50	4.15	3.83	3.53	3.25	3.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Dimethomorph	1.52	1.46	1.40	1.34	1.28	1.23	1.18	1.13	1.09	1.04	1.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Fenpropathrin	1.77	1.67	1.58	1.49	1.41	1.33	1.26	1.19	1.12	1.06	1.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Fludioxonil	0.94	0.92	0.89	0.86	0.84	0.81	0.79	0.77	0.74	0.72	0.7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Fluvalinate	1.52	1.36	1.22	1.09	0.97	0.87	0.78	0.70	0.62	0.56	0.5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Imidacloprid	1.70	1.61	1.53	1.45	1.37	1.30	1.24	1.17	1.11	1.05	1.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Pyrimethanil	12.24	9.53	7.42	5.77	4.50	3.50	2.72	2.12	1.65	1.28	1.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Tetraconazole	6.97	6.15	5.43	4.79	4.23	3.73	3.29	2.91	2.57	2.27	2.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Tolylfluanid	6.23	5.56	4.96	4.43	3.95	3.53	3.15	2.81	2.51	2.24	2.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Trifloxystrobin	2.65	2.58	2.50	2.43	2.37	2.30	2.24	2.18	2.12	2.06	2.0
채소류	과채류	토마토	Triflumizole	5.87	5.27	4.73	4.25	3.81	3.43	3.08	2.76	2.48	2.23	2.0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Azoxystrobin	5.61	5.06	4.57	4.12	3.71	3.35	3.02	2.73	2.46	2.22	2.0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Carbendazim	9.57	8.97	8.40	7.88	7.38	6.92	6.48	6.07	5.69	5.34	5.0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Chlorpyrifos	0.56	0.55	0.54	0.54	0.53	0.53	0.52	0.52	0.51	0.51	0.5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Cypermethrin	0.58	0.57	0.56	0.55	0.54	0.54	0.53	0.52	0.51	0.51	0.5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Diethofencarb	7.96	7.60	7.25	6.92	6.61	6.31	6.02	5.75	5.49	5.24	5.0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Diflubenzuron	1.87	1.76	1.65	1.55	1.45	1.37	1.28	1.21	1.13	1.06	1.0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Dimethomorph	0.81	0.77	0.73	0.70	0.67	0.64	0.61	0.58	0.55	0.52	0.5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Imidacloprid	1.72	1.63	1.54	1.46	1.38	1.31	1.24	1.18	1.11	1.06	1.0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Iprodione	12.48	11.39	10.40	9.49	8.66	7.90	7.21	6.58	6.00	5.48	5.0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Lufenuron	1.08	1.00	0.93	0.86	0.80	0.74	0.68	0.63	0.58	0.54	0.5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Procymidone	6.91	6.69	6.47	6.27	6.07	5.88	5.69	5.51	5.33	5.16	5.0
채소류	과채류	파프리카	Triflumizole	23.21	19.90	17.07	14.64	12.56	10.77	9.24	7.92	6.80	5.83	5.0
채소류	근채류	양파	Folpet	8.31	7.20	6.25	5.42	4.70	4.08	3.54	3.07	2.66	2.31	2.0
채소류	근채류	양파	Metalaxyl	0.50	0.46	0.42	0.38	0.35	0.32	0.29	0.26	0.24	0.22	0.2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Azoxystrobin	2.90	2.80	2.69	2.59	2.50	2.41	2.32	2.24	2.15	2.08	2.0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Bifenthrin	0.34	0.30	0.26	0.23	0.21	0.18	0.16	0.14	0.13	0.11	0.1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Carbendazim	0.77	0.74	0.71	0.68	0.65	0.62	0.60	0.57	0.55	0.52	0.5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Cypermethrin	17.77	15.65	13.79	12.15	10.70	9.43	8.30	7.31	6.44	5.68	5.0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Difenoconazole	0.21	0.19	0.16	0.14	0.12	0.10	0.09	0.08	0.07	0.06	0.05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Dimethomorph	5.75	5.39	5.05	4.73	4.43	4.15	3.89	3.65	3.42	3.20	3.0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EBDC	0.76	0.69	0.63	0.57	0.52	0.48	0.43	0.40	0.36	0.33	0.3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Flufenoxuron	0.70	0.67	0.65	0.63	0.61	0.59	0.57	0.55	0.53	0.52	0.5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Imidacloprid	2.20	1.89	1.63	1.41	1.22	1.05	0.90	0.78	0.67	0.58	0.5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Indoxacarb	1.99	1.73	1.51	1.31	1.14	1.00	0.87	0.76	0.66	0.57	0.5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Lufenuron	0.33	0.31	0.30	0.28	0.27	0.26	0.24	0.23	0.22	0.21	0.2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Myclobutanil	3.19	2.84	2.53	2.25	2.01	1.79	1.59	1.42	1.26	1.12	1.0
채소류	엽경채류	대파	Triflumizole	3.54	3.12	2.75	2.42	2.13	1.88	1.66	1.46	1.29	1.13	1.0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Carbendazim	7.95	6.46	5.25	4.27	3.47	2.82	2.29	1.86	1.51	1.23	1.0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Chlorfenapyr	18.15	15.16	12.66	10.58	8.83	7.38	6.16	5.15	4.30	3.59	3.0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Chlorpyrifos	0.05	0.04	0.03	0.03	0.02	0.02	0.02	0.02	0.01	0.01	0.01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Cyfluthrin	5.03	4.59	4.18	3.81	3.48	3.17	2.89	2.64	2.40	2.19	2.0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Cyhalothrin	8.20	7.12	6.18	5.37	4.66	4.05	3.52	3.05	2.65	2.30	2.0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Cypermethrin	2.07	1.79	1.56	1.35	1.17	1.02	0.88	0.77	0.66	0.58	0.5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Deltamethrin	1.67	1.26	0.95	0.72	0.54	0.41	0.31	0.23	0.18	0.13	0.1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Dichlofluanid	92.58	77.17	64.33	53.63	44.70	37.26	31.06	25.90	21.59	17.99	15.0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Endosulfan	0.33	0.29	0.26	0.23	0.21	0.18	0.16	0.14	0.13	0.11	0.1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Fenvalerate	1.16	1.06	0.98	0.90	0.83	0.76	0.70	0.64	0.59	0.54	0.5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Procymidone	14.71	13.20	11.85	10.64	9.55	8.58	7.70	6.91	6.20	5.57	5.0
채소류	엽경채류	부추	Triflumizole	26.71	19.23	13.85	9.97	7.18	5.17	3.72	2.68	1.93	1.39	1.0
채소류	엽경채류	쪽파	Chlorfenapyr	14.27	10.94	8.38	6.43	4.93	3.78	2.90	2.22	1.70	1.30	1.0
채소류	엽경채류	쪽파	Diazinon	1.23	0.96	0.75	0.58	0.45	0.35	0.27	0.21	0.17	0.13	0.1
채소류	엽경채류	쪽파	Iprodione	0.45	0.39	0.34	0.29	0.25	0.21	0.18	0.16	0.14	0.12	0.1
채소류	엽채류	고추잎	Chlorfenapyr	12.73	11.99	11.29	10.64	10.02	9.44	8.89	8.38	7.89	7.43	7.0
채소류	엽채류	고추잎	Chlorpyrifos- methyl	0.70	0.57	0.47	0.39	0.32	0.26	0.22	0.18	0.15	0.12	0.1
채소류	엽채류	고추잎	Methomyl	1.42	1.28	1.15	1.04	0.93	0.84	0.76	0.68	0.62	0.55	0.5
채소류	엽채류	고추잎	Vinclozolin	1.68	1.59	1.51	1.44	1.36	1.29	1.23	1.17	1.11	1.05	1.0
채소류	엽채류	근대	Bifenthrin	5.41	4.57	3.86	3.26	2.75	2.33	1.96	1.66	1.40	1.18	1.0
채소류	엽채류	근대	Furathiocarb	149.33	97.01	63.03	40.95	26.60	17.28	11.23	7.29	4.74	3.08	2.0
채소류	엽채류	근대	Imidacloprid	38.78	26.90	18.66	12.94	8.98	6.23	4.32	3.00	2.08	1.44	1.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Bifenthrin	7.76	6.78	5.92	5.17	4.51	3.94	3.44	3.00	2.62	2.29	2.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Carbendazim	10.78	9.98	9.24	8.56	7.93	7.34	6.80	6.30	5.83	5.40	5.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Chlorfluazuron	7.21	6.34	5.58	4.91	4.32	3.80	3.34	2.94	2.58	2.27	2.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Chlorothalonil	30.16	25.20	21.05	17.59	14.70	12.28	10.26	8.57	7.16	5.98	5.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Cypermethrin	25.24	21.47	18.26	15.53	13.21	11.23	9.55	8.13	6.91	5.88	5.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DDVP	25.87	20.03	15.50	12.00	9.29	7.19	5.57	4.31	3.34	2.58	2.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Diethofencarb	8.06	7.68	7.32	6.98	6.66	6.35	6.05	5.77	5.50	5.24	5.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Fenazaquin	23.37	19.04	15.50	12.63	10.28	8.37	6.82	5.55	4.52	3.68	3.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Fenpyroximate	5.19	4.72	4.29	3.90	3.55	3.22	2.93	2.66	2.42	2.20	2.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Flufenoxuron	6.42	5.72	5.09	4.53	4.03	3.58	3.19	2.84	2.53	2.25	2.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Imidacloprid	8.71	8.24	7.79	7.37	6.98	6.60	6.24	5.91	5.59	5.29	5.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Pymetrozine	14.91	10.62	7.56	5.38	3.83	2.73	1.94	1.38	0.99	0.70	0.5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Pyrimethanil	19.35	16.90	14.76	12.89	11.26	9.83	8.59	7.50	6.55	5.72	5.0
채소류	엽채류	들깻잎	Tebufenpyrad	48.20	38.43	30.64	24.43	19.47	15.52	12.38	9.87	7.87	6.27	5.0
채소류	엽채류	배추	Bifenthrin	1.03	0.96	0.89	0.83	0.77	0.72	0.67	0.62	0.58	0.54	0.5
채소류	엽채류	배추	Buprofezin	1.97	1.84	1.72	1.61	1.50	1.40	1.31	1.23	1.14	1.07	1.0
채소류	엽채류	배추	Carbaryl	7.27	5.56	4.26	3.26	2.49	1.91	1.46	1.12	0.85	0.65	0.5
채소류	엽채류	배추	Chlorfenapyr	1.08	1.00	0.92	0.86	0.79	0.73	0.68	0.63	0.58	0.54	0.5
채소류	엽채류	배추	Chlorpyrifos	0.82	0.71	0.62	0.54	0.47	0.40	0.35	0.31	0.27	0.23	0.2
채소류	엽채류	배추	Cyhalothrin	8.35	6.75	5.46	4.42	3.57	2.89	2.34	1.89	1.53	1.24	1.0
채소류	엽채류	배추	Deltamethrin	0.97	0.91	0.85	0.80	0.75	0.70	0.65	0.61	0.57	0.53	0.5
채소류	엽채류	배추	Diazinon	0.96	0.76	0.61	0.49	0.39	0.31	0.25	0.20	0.16	0.13	0.1
채소류	엽채류	배추	Dimethomorph	9.68	8.27	7.06	6.03	5.15	4.40	3.76	3.21	2.74	2.34	2.0
채소류	엽채류	배추	Flufenoxuron	1.21	1.11	1.01	0.93	0.85	0.78	0.71	0.65	0.60	0.55	0.5
채소류	엽채류	배추	Fluvalinate	1.80	1.69	1.60	1.51	1.42	1.34	1.26	1.19	1.12	1.06	1.0
채소류	엽채류	배추	Pirimiphos-methyl	58.86	41.97	29.93	21.34	15.22	10.85	7.74	5.52	3.93	2.80	2.0
채소류	엽채류	배추	Profenofos	25.98	20.10	15.55	12.04	9.31	7.21	5.58	4.32	3.34	2.58	2.0
채소류	엽채류	배추	Prothiofos	0.11	0.10	0.09	0.09	0.08	0.07	0.07	0.06	0.06	0.05	0.05
채소류	엽채류	배추	Teflubenzuron	0.28	0.27	0.26	0.25	0.24	0.24	0.23	0.22	0.21	0.21	0.2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채소류	엽채류	상추	Acephate	27.78	23.40	19.72	16.61	13.99	11.79	9.93	8.36	7.05	5.94	5.0
채소류	엽채류	상추	Azoxystrobin	11.67	9.78	8.20	6.88	5.76	4.83	4.05	3.40	2.85	2.39	2.0
채소류	엽채류	상추	Carbendazim	23.39	20.05	17.18	14.72	12.62	10.82	9.27	7.94	6.81	5.83	5.0
채소류	엽채류	상추	Chlorothalonil	39.39	32.04	26.07	21.21	17.25	14.03	11.42	9.29	7.56	6.15	5.0
채소류	엽채류	상추	Chlorpyrifos	0.30	0.21	0.15	0.11	0.08	0.05	0.04	0.03	0.02	0.01	0.01
채소류	엽채류	상추	Cyhalothrin	39.10	29.05	21.58	16.03	11.90	8.84	6.57	4.88	3.62	2.69	2.0
채소류	엽채류	상추	Cypermethrin	33.49	25.26	19.06	14.38	10.85	8.18	6.17	4.66	3.51	2.65	2.0
채소류	엽채류	상추	Deltamethrin	34.22	22.43	14.70	9.63	6.31	4.14	2.71	1.78	1.16	0.76	0.5
채소류	엽채류	상추	Diazinon	1.40	1.08	0.83	0.64	0.49	0.37	0.29	0.22	0.17	0.13	0.1
채소류	엽채류	상추	Dimethomorph	75.11	59.24	46.73	36.86	29.07	22.93	18.09	14.27	11.25	8.87	7.0
채소류	엽채류	상추	Endosulfan	0.19	0.18	0.17	0.16	0.15	0.14	0.13	0.12	0.11	0.11	0.1
채소류	엽채류	상추	Fenvalerate	83.03	57.20	39.41	27.15	18.70	12.89	8.88	6.12	4.21	2.90	2.0
채소류	엽채류	상추	Metalaxyl	109.09	73.13	49.03	32.87	22.03	14.77	9.90	6.64	4.45	2.98	2.0
채소류	엽채류	상추	Methamidophos	5.56	4.68	3.94	3.32	2.80	2.36	1.99	1.67	1.41	1.19	1.0
채소류	엽채류	상추	Procymidone	30.04	25.11	20.99	17.54	14.66	12.26	10.24	8.56	7.16	5.98	5.0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Bifenthrin	18.20	14.59	11.70	9.38	7.52	6.03	4.84	3.88	3.11	2.49	2.0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Chlorfenapyr	1.46	1.31	1.18	1.06	0.95	0.85	0.77	0.69	0.62	0.56	0.5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Chlorpyrifos	0.10	0.08	0.06	0.05	0.04	0.03	0.02	0.02	0.02	0.01	0.01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Cyazofamid	10.62	9.36	8.25	7.27	6.40	5.64	4.97	4.38	3.86	3.40	3.0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Cyhalothrin	1.29	1.17	1.06	0.97	0.88	0.80	0.73	0.66	0.60	0.55	0.5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Cypermethrin	3.05	2.93	2.81	2.69	2.58	2.47	2.37	2.27	2.18	2.09	2.0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Deltamethrin	1.89	1.66	1.45	1.27	1.11	0.97	0.85	0.75	0.65	0.57	0.5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Diazinon	9.54	6.05	3.83	2.43	1.54	0.98	0.62	0.39	0.25	0.16	0.1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Dimethomorph	11.53	10.07	8.81	7.70	6.73	5.88	5.14	4.49	3.93	3.43	3.0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Endosulfan	0.30	0.27	0.24	0.22	0.19	0.17	0.16	0.14	0.12	0.11	0.1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Flufenoxuron	2.17	1.88	1.62	1.40	1.21	1.04	0.90	0.78	0.67	0.58	0.5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Lufenuron	0.27	0.27	0.26	0.25	0.24	0.23	0.23	0.22	0.21	0.21	0.2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Metalaxyl	30.60	23.30	17.74	13.50	10.28	7.82	5.96	4.53	3.45	2.63	2.0
채소류	엽채류	시금치	Tebufenozide	10.36	8.20	6.49	5.14	4.07	3.22	2.55	2.02	1.60	1.26	1.0
채소류	엽채류	쑥갓	Chlorfenapyr	11.84	9.91	8.29	6.94	5.81	4.87	4.07	3.41	2.85	2.39	2.0
채소류	엽채류	쑥갓	Chlorpyrifos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채소류	엽채류	쑥갓	Cypermethrin	26.30	22.27	18.87	15.98	13.54	11.47	9.71	8.23	6.97	5.90	5.0
채소류	엽채류	쑥갓	Diazinon	0.21	0.20	0.18	0.17	0.16	0.15	0.13	0.13	0.12	0.11	0.1
채소류	엽채류	쑥갓	Endosulfan	0.18	0.17	0.16	0.15	0.14	0.13	0.13	0.12	0.11	0.11	0.1
채소류	엽채류	쑥갓	Fenitrothion	0.55	0.50	0.45	0.41	0.37	0.33	0.30	0.27	0.24	0.22	0.2
채소류	엽채류	쑥갓	Fenvalerate	2.68	2.27	1.92	1.62	1.37	1.16	0.98	0.83	0.70	0.59	0.5
채소류	엽채류	쑥갓	Folpet	8.28	7.19	6.23	5.41	4.69	4.07	3.53	3.06	2.66	2.31	2.0
채소류	엽채류	쑥갓	Imidacloprid	10.68	9.03	7.64	6.46	5.46	4.62	3.91	3.31	2.80	2.36	2.0
채소류	엽채류	쑥갓	Myclobutanil	3.45	3.05	2.69	2.38	2.10	1.86	1.64	1.45	1.28	1.13	1.0
채소류	엽채류	쑥갓	Pymetrozine	3.19	2.74	2.36	2.02	1.74	1.49	1.28	1.10	0.95	0.81	0.7
채소류	엽채류	아욱	Bifenthrin	1.52	1.45	1.39	1.34	1.28	1.23	1.18	1.13	1.09	1.04	1.0
채소류	엽채류	아욱	Imidacloprid	208.10	122.02	71.55	41.96	24.60	14.43	8.46	4.96	2.91	1.71	1.0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채소류	엽채류	아욱	Pymetrozine	21.16	15.59	11.49	8.47	6.24	4.60	3.39	2.50	1.84	1.36	1.0
채소류	엽채류	양배추	Chlorpyrifos	1.18	0.93	0.72	0.56	0.44	0.34	0.27	0.21	0.16	0.13	0.1
채소류	엽채류	양배추	Cyhalothrin	1.65	1.34	1.08	0.88	0.71	0.57	0.47	0.38	0.31	0.25	0.2
채소류	엽채류	양배추	Deltamethrin	0.39	0.37	0.34	0.32	0.30	0.28	0.26	0.24	0.23	0.21	0.2
채소류	엽채류	양배추	Pirimiphos-methyl	29.40	20.97	14.95	10.66	7.60	5.42	3.87	2.76	1.97	1.40	1.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Acetamiprid	7.70	7.01	6.38	5.80	5.28	4.81	4.37	3.98	3.62	3.30	3.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Bifenthrin	5.48	4.32	3.40	2.67	2.10	1.66	1.30	1.03	0.81	0.64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arbaryl	2.95	2.47	2.07	1.73	1.45	1.22	1.02	0.85	0.71	0.60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arbendazim	4.58	4.22	3.88	3.57	3.29	3.03	2.79	2.56	2.36	2.17	2.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hlorfenapyr	1.24	1.13	1.03	0.94	0.86	0.79	0.72	0.66	0.60	0.55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hlorothalonil	9.35	8.78	8.25	7.75	7.28	6.84	6.42	6.03	5.67	5.32	5.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hlorpyrifos- methyl	4.47	3.05	2.09	1.43	0.98	0.67	0.46	0.31	0.21	0.15	0.1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lothianidin	0.50	0.46	0.42	0.38	0.35	0.32	0.29	0.26	0.24	0.22	0.2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yazofamid	6.97	6.15	5.43	4.79	4.23	3.73	3.30	2.91	2.57	2.27	2.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yhalothrin	5.53	4.66	3.93	3.31	2.79	2.35	1.98	1.67	1.41	1.19	1.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ymoxanil	5.70	4.47	3.50	2.75	2.15	1.69	1.32	1.04	0.81	0.64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Cypermethrin	30.10	25.15	21.02	17.57	14.68	12.27	10.25	8.57	7.16	5.98	5.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Deltamethrin	3.48	2.87	2.36	1.95	1.60	1.32	1.09	0.90	0.74	0.61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Diazinon	9.64	6.11	3.87	2.45	1.55	0.98	0.62	0.39	0.25	0.16	0.1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Diflubenzuron	8.92	7.68	6.61	5.70	4.90	4.22	3.64	3.13	2.70	2.32	2.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Dimethomorph	17.87	14.36	11.53	9.26	7.44	5.98	4.80	3.86	3.10	2.49	2.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Dinotefuran	20.54	16.95	13.98	11.54	9.52	7.85	6.48	5.34	4.41	3.64	3.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Endosulfan	1.69	1.37	1.11	0.89	0.72	0.58	0.47	0.38	0.31	0.25	0.2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Ethofenprox	9.97	8.49	7.23	6.16	5.24	4.46	3.80	3.24	2.76	2.35	2.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Fenvalerate	5.39	4.56	3.85	3.25	2.75	2.32	1.96	1.66	1.40	1.18	1.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Flufenoxuron	1.49	1.33	1.20	1.07	0.96	0.86	0.77	0.69	0.62	0.56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Imidacloprid	32.03	25.67	20.57	16.49	13.21	10.59	8.49	6.80	5.45	4.37	3.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Indoxacarb	7.20	6.33	5.57	4.90	4.31	3.79	3.34	2.94	2.58	2.27	2.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Lufenuron	0.46	0.42	0.39	0.36	0.33	0.30	0.28	0.26	0.24	0.22	0.2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Metalaxyl	6.64	5.13	3.96	3.06	2.36	1.82	1.41	1.09	0.84	0.65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Methomyl	5.04	4.00	3.18	2.52	2.00	1.59	1.26	1.00	0.79	0.63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Methoxyfenozide	22.48	19.34	16.64	14.32	12.32	10.60	9.12	7.85	6.75	5.81	5.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Phenthoate	15.56	9.39	5.67	3.42	2.07	1.25	0.75	0.45	0.27	0.17	0.1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Procyimdone	12.36	11.29	10.31	9.42	8.61	7.86	7.18	6.56	5.99	5.47	5.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Prothiofos	0.15	0.13	0.12	0.11	0.10	0.09	0.08	0.07	0.06	0.06	0.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Tebufenozide	2.29	2.10	1.94	1.78	1.64	1.51	1.39	1.28	1.18	1.09	1.0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Teflubenzuron	0.42	0.39	0.36	0.33	0.31	0.29	0.27	0.25	0.23	0.22	0.2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Thiacloprid	1.85	1.62	1.42	1.25	1.09	0.96	0.84	0.74	0.65	0.57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Thiamethoxam	3.06	2.55	2.13	1.78	1.48	1.24	1.03	0.86	0.72	0.60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Tralomethrin	1.67	1.48	1.31	1.16	1.03	0.91	0.81	0.72	0.64	0.56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Trifloxystrobin	1.79	1.57	1.38	1.22	1.07	0.94	0.83	0.73	0.64	0.57	0.5
채소류	엽채류	얼갈이배추	Zoxamide	13.73	11.79	10.13	8.70	7.47	6.42	5.51	4.73	4.07	3.49	3.0

대분류	소분류	품목	성분명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채소류	엽채류	열무	Carbaryl	1.26	1.15	1.05	0.95	0.87	0.79	0.72	0.66	0.60	0.55	0.5
채소류	엽채류	열무	Chlorpyrifos	0.13	0.10	0.08	0.06	0.05	0.04	0.03	0.02	0.02	0.01	0.01
채소류	엽채류	열무	Cyhalothrin	9.82	7.81	6.22	4.95	3.94	3.13	2.49	1.98	1.58	1.26	1.0
채소류	엽채류	열무	Cypermethrin	15.65	13.96	12.46	11.11	9.91	8.85	7.89	7.04	6.28	5.60	5.0
채소류	엽채류	열무	Diazinon	5.41	3.63	2.43	1.63	1.10	0.74	0.49	0.33	0.22	0.15	0.1
채소류	엽채류	열무	Endosulfan	1.94	1.44	1.07	0.80	0.59	0.44	0.33	0.24	0.18	0.13	0.1
채소류	엽채류	열무	EPN	0.63	0.52	0.43	0.36	0.30	0.25	0.21	0.17	0.14	0.12	0.1
채소류	엽채류	열무	Fenvalerate	28.98	25.48	22.40	19.69	17.32	15.23	13.39	11.77	10.35	9.10	8.0
채소류	엽채류	열무	Flufenoxuron	1.17	1.07	0.98	0.90	0.83	0.76	0.70	0.64	0.59	0.54	0.5
채소류	엽채류	열무	Tralomethrin	2.54	2.16	1.84	1.56	1.33	1.13	0.96	0.81	0.69	0.59	0.5
채소류	엽채류	열무	Triflumizole	6.92	5.70	4.70	3.87	3.19	2.63	2.17	1.79	1.47	1.21	1.0
채소류	엽채류	참나물	Cypermethrin	5.23	4.94	4.68	4.42	4.19	3.96	3.75	3.54	3.35	3.17	3.0
채소류	엽채류	참나물	Fenvalerate	2.03	1.89	1.76	1.64	1.53	1.42	1.33	1.24	1.15	1.07	1.0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Azoxystrobin	20.69	17.06	14.06	11.59	9.56	7.88	6.49	5.35	4.41	3.64	3.0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Chlorpyrifos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Cypermethrin	25.60	21.74	18.46	15.68	13.32	11.31	9.61	8.16	6.93	5.89	5.0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EPN	0.20	0.19	0.17	0.16	0.15	0.14	0.13	0.12	0.11	0.11	0.1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Fenobucarb	1.26	1.15	1.04	0.95	0.87	0.79	0.72	0.66	0.60	0.55	0.5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Fenvalerate	16.10	13.61	11.50	9.72	8.22	6.95	5.87	4.97	4.20	3.55	3.0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Flufenoxuron	1.07	0.99	0.92	0.85	0.79	0.73	0.68	0.63	0.58	0.54	0.5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Hexaconazole	4.41	3.80	3.28	2.83	2.44	2.10	1.81	1.56	1.35	1.16	1.0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Imidacloprid	186.72	123.53	81.73	54.07	35.77	23.67	15.66	10.36	6.85	4.53	3.0
채소류	엽채류	취나물	Procymidone	9.55	8.95	8.39	7.86	7.37	6.91	6.48	6.07	5.69	5.33	5.0
채소류	엽채류	치커리	Cypermethrin	24.86	21.18	18.04	15.37	13.09	11.15	9.50	8.09	6.89	5.87	5.0
채소류	엽채류	치커리	Fenvalerate	4.07	3.53	3.07	2.67	2.32	2.02	1.75	1.52	1.32	1.15	1.0
호프류		호프	Metalaxyl	120.25	93.77	73.13	57.02	44.47	34.68	27.04	21.09	16.44	12.82	10.0
호프류		호프	Tetradifon	1.34	1.30	1.26	1.23	1.19	1.16	1.12	1.09	1.06	1.03	1.0

[별표2]

기준 산정을 위한 계산표

(단위 : mg/kg)

대분류	소분류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출하일
곡 류		1.30	1.27	1.23	1.20	1.17	1.14	1.11	1.08	1.05	1.03	1.0
서 류		1.13	1.11	1.10	1.09	1.07	1.06	1.05	1.04	1.02	1.01	1.0
콩 류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견과중실류	견 과 류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중 실 류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과 실 류	이 과 류	1.26	1.23	1.21	1.18	1.15	1.12	1.10	1.07	1.05	1.02	1.0
	감 껍 류	1.30	1.27	1.24	1.20	1.17	1.14	1.11	1.08	1.05	1.03	1.0
	핵 과 류	1.72	1.63	1.55	1.46	1.39	1.31	1.24	1.18	1.12	1.06	1.0
	장 과 류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열대과일류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채 소 류	엽 채 류	1.37	1.33	1.29	1.25	1.21	1.17	1.14	1.10	1.07	1.03	1.0
	엽경채류	1.39	1.35	1.30	1.26	1.22	1.18	1.14	1.10	1.07	1.03	1.0
	근 채 류	2.52	2.29	2.09	1.91	1.74	1.59	1.45	1.32	1.20	1.10	1.0
	과 채 류	1.07	1.06	1.06	1.05	1.04	1.03	1.03	1.02	1.01	1.01	1.0
버섯 류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차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인삼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호프		1.34	1.30	1.26	1.23	1.19	1.16	1.12	1.09	1.06	1.03	1.0
기타식물류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최저기준		1.05	1.04	1.04	1.03	1.03	1.02	1.02	1.01	1.01	1.00	1.0

<적용방법>

기준 = 해당농산물이 속하는 계산표의 수치 × 해당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09년 6월 일 인쇄

2009년 6월 일 발생

발행처__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소득안정추진단**

주 소__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 화__ 02-500-1768~1769

팩 스__ 02-504-9420

<http://www.mifaff.gr.kr>

인 쇄__ **한라인쇄**

전 화__ 02-503-3011

팩 스__ 02-503-1431

E-mail __ hanra503@naver.com